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발 의 자 : 도정태의원외6인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권고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며,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“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”로 함

나.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, 인용법령명에 낫표 표시(안 제1조, 제5조 및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조례 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통괄하고”를 “통할하고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소속위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중 “성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”을 “「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명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	**제명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**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**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**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**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
제3조(사무과장) ①**(생 략)**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**통괄하고**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제3조(사무과장) ①**(현행과 같음)** ②---------- ---- **통할하고** ----------.
제4조(전문위원) ①**소속위원**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 ②~③**(생 략)**	제4조(전문위원) ①**위원회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~③**(현행과 같음)**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**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**로 정한다.	제5조(직원의 정원) ---------- ---- **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**----.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**성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**으로 정한다.	제6조(시행규칙) ---------- ---------- **「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**--.